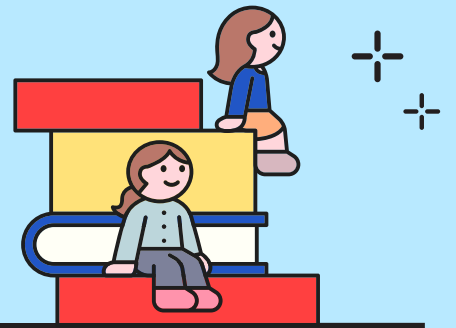


필수의무교육



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아동학대 예방교육	근거	• 아동복지법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※ 온라인교육의 경우 교육부 위탁·운영 기관으로 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온라인)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
	비고	• 집합교육 : 육아종합지원센터(아동학대예방교육-보수교육연계, 실시간 온라인) • 온라인 교육 : 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, 경기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,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※ 온라인교육의 경우 교육부 위탁·운영 기관으로 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온라인)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
	비고	• 집합교육 : 육아종합지원센터(아동학대예방교육-보수교육연계, 실시간 온라인) • 온라인 교육 : 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, 경기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,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※ 온라인교육의 경우 교육부 위탁·운영 기관으로 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온라인)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
	비고	• 온라인 교육 : 한국보건복지인재원(https://cyber.kohi.or.kr),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 ※ 매년 1/1~12/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지자체로 제출(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'온라인교육'은 교육이수증 첨부)



보육교직원 **법정 의무교육**

교육명	구분	내용
개인정보 보호교육	근거	●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2항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	대상	● 모든 보육교직원(개인정보 취급자는 모두 해당)
	횟수	●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● 온라인교육
	비고	● 개인정보배움터(https://edu.privacy.go.kr)>온라인 ※ 자체교육 실시 시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(개인정보배움터>공지사항>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> 계획서 서식 참고) ● 과태료 : 사고·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	대상	●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●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● 온라인교육, 자체교육 ※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.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.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장
	비고	● 온라인교육 :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> 정보공개 > 자주 찾는 자료실 >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(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) ● 자체교육 :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> 정보공개 > 자주 찾는 자료실 >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(리플릿, 매뉴얼 등-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)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	근거	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
	대상	●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●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●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※ 온라인교육의 경우 교육부 위탁·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온라인)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
	비고	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'직장 내 괴롭힘' 관련 내용 작성 필수



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성희롱· 성폭력 고충 담당자 교육	근거	•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	대상	• 고충 담당자(어린이집에서 담당자 1인 지정)
	횟수	• 신규 지정 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※ 3년간 유효(예 : 2026년 교육 이수->2029년 재이수)
	방법	• 온라인교육 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러닝>보육교직원용>온라인교육>어린이집 고충상담원교육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(www.kigepe.or.kr)
	비고	•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(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, 고충상담창구 설치, 성희롱/성폭력 예방 지침 마련) 중 1개 항목이라도 미 이행시 부진기관으로 분류 ★어린이집은 부진기관에서 제외 실적 매년 입력 :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(shp.mogef.go.kr) ※ 3년간 이수 이력(년도)을 선택하여 실적 입력
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, 시행령 제2조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(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)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• 대면교육, 온라인교육 ※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, (★추가)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함 * 보육교직원 1인 이상 대면 교육 참여
	비고	• 온라인 교육 :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(shp.mogef.go.kr) 등 ※ 매년 1/1~12/31 실시한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절차), 시행령 제36조의6(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)
	방법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
	비고	• 온라인 교육 : 온라인교육 : 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, 경기 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, 중앙교육연수원(www.neti.go.kr), 나라배움터(e-learning.nhi.go.kr)



보육교직원 **법정 의무교육**

교육명	구분	내용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	근거	• 결핵예방법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조, 제4조의2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
	방법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※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
	비고	• 대한결핵협회(www.knta.or.kr) 결핵동영상 '어린이집 종사자용' 영상 >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후 자체연수보고서 작성
자살예방 교육	근거	•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(24.07.12. 시행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)
	방법	• 집합온라인교육
	비고	•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(www.kfsp.or.kr) >학습자로그인>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※ 교육지정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만 인정되며, 그 외 교육기관 자체 콘텐츠 인정불가
보육교직원 안전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2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[별표8] • 2026년 보육사업안내 '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'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2시간 이상)
	방법	• 온라인교육 :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(e.csia.or.kr)>교육 개요>보육교직원 안전교육 4종-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, 유아담당교사 과정 중 택 ※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	비고	•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, 등·하원 안전교육과 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교육 같음 가능



보육교직원 **법정 의무교육**

교육명	구분	내용
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시행령 제5조의2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합 교육, 원격 교육, 체험 교육 - 자체 집합 교육 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>교육자료실(사업주 또는 직원이 자료다운 받은 후 교육 실시) - 집합교육: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,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-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>이러닝교육 <p>★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</p>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각각 이수해야함 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(주무부처 : 고용노동부) -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(주무부처 : 보건복지부) 	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시행령 제16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(1시간 이상) ★기관별 대면교육 1인 이상 필수 ※교육대상별 기준 : 유아(20분), 성인(60분) ※학생 제외대상 : 만 3세 미만 영아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- 집합교육 :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,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- 온라인교육 :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(www.able-edu.or.kr) <p>※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,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(집합)교육을 포함해야함</p>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적 매년 입력 :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	
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(등·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 교육 ※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같음 가능



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※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해야 함 ※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 ※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 대상 제외(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, 영양사, 조리원, 운전기사 제외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(4시간 이상-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(이론만 해당) ※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 : 행정안전부고시-「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※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
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※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.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, 지자체 소속·위탁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강사자격 요건을 갖추어 교육을 진행 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인정 가능
퇴직연금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, 시행령 제32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※ 제외대상 :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(개인형IRA)에 가입한 근로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교육, 서면교육(연금사업자(은행) 등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)
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(https://pension.kcomwel.or.kr)
고농도 미세먼지· 오존 대응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6년 보육사업안내 •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매뉴얼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 교육 ※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같음 가능



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, 시행규칙 제20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경우 :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-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-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: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 신규교육 •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(4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교육 :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시스템 (http://cpf.go.kr)
석면 안전 관리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, 시행령 제35조, 시행규칙 제33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(09. 1. 1. 이전 설치 어린이집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교육 :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•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(4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교육 : 국립환경인력개발원(ehrd.me.go.kr)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, 시행령제2조, 시행규칙 제5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면적 430㎡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교육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•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(6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교육 : 한국환경보전원(www.kepaedu.or.kr)>환경법정교육>실내 공기질관리자
식품위생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위생법 제41조, 동법 시행규칙 제52조1항, 2항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(조리사, 영양사 등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자 : 연 1회(신규 6시간, 재교육 3시간) • 조리사·영양사 : 연 1회 6시간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자 : 한국식품산업협회(www.kfia.or.kr) • 조리사·영양사 :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(www.ikca.or.kr), 대한영양사 협회(www.dietitian.or.kr)



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로교통법53조3, 시행령 제31조2항, 시행규칙 제37조5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안전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(3시간) 정기 안전교육 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(3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교육 : 안전운전 통합민원(safedriving.or.kr)>지역별 신청 온라인교육 : 교통안전 교육센터(trafficedu.koroad.or.kr)>통학버스교육 >'운영자 및 운전자' 선택 ※ 교육확인증 비치 방법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) : 어린이통합 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정확히 비치해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자 교육확인증 : 어린이교육시설 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- 운전자 교육확인증 : 어린이통합버스의 내부
어린이집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로교통법53조3, 시행령 제31조2항, 시행규칙 제37조5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(※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교육 : 안전운전 통합민원(safedriving.or.kr) > 지역별 신청 온라인교육 : 교통안전 교육센터(trafficedu.koroad.or.kr) > 통학버스교육 > '동승보호자, 운영자 및 운전자' 선택 ※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(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) 이수,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 확인
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, 34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교육 :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 :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※ 온라인교육(40분), 오프라인(4시간), 온·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수 필수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소방안전원(www.kfsi.or.kr) / 관련 문의 1899-4819
승강기 관리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, 시행규칙 제52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교육 :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3개월 이내(4시간) 보수교육 : 3년에 1회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강의 등 ※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(edu.koelsa.or.kr)



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6년 보육사업안내 •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·대응 매뉴얼 참고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 교육 담당자(원장 또는 보육교직원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이상(1시간)
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교육 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(https://lms.educare.or.kr)> 개설강좌>보육교직원용>온라인교육>영유아 성 행동 이해 및 성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※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'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'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,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·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★어린이집 법정 교육 기타 참고 사항	산업안전 보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'산업안전보건교육' 제외업종으로 교육 의무 해당사항 없음
	인터넷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교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보육대상 아동(5~7세, 만 3세 미만)은 안내자료-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(학부모 교육 권고)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, 매년 4월 30일 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(관련 사이트 : 스마트쉼센터(https://www.iapc.or.kr) - 실적 등록 사이트 동일)

해당 목록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, 시설 유형이나 규모, 직급에 따른 교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